

광주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나5331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20나53315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8가단53786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음

담당변호사 김정희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김승철

변론 종결2021. 3. 11.

판결 선고2021. 3. 25.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20. 2. 4. 선고 2018가단53786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중 '피고는' 뒤에 '소외 주식회사 C에게'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을 이 판결의 별지 목록으로 바꾸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7.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8. 11. 7. 접수 제1977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5. 5. 12. C로부터 D 아파트(이하 'D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위 신축공사를 완성하였다.

2) 원고는 C로부터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자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58245호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11. 14. "C은 원고에게 6,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C이 항소하였고,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9나25201호)에서는 C이 원고에게 총

210,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한 사실을 인정하여 2020. 11. 18. "C은 원고에게 5,9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2020. 11.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또한 원고는 C에게 2016. 12. 20.경부터 2017. 10. 20.경까지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C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60057호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 11. 28. "C은 원고에게 609,673,5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C이 항소(광주고등법원 2019나25591)하였으나 2020. 10. 15.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처분행위

C은 2018. 11. 7. 피고와 사이에 D 아파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아파트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8. 11. 7. 접수 제1977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의 재산상태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C은 적극재산으로 ① 분양잔대금 채권 6,151,425,400원, ② 부동산 771,926,000원(광주 동구 ○ 임야 1,748㎡, P 임야 495㎡, D 아파트 Q호, R호)으로 총 6,923,351,400원(= 6,151,425,400원 + 771,926,000원) 상당을 보유한 반면, 소극재산으로 ① H조합에 대한 분양대금 대출보증 관련 채무 4,270,972,700원, ② 원고에 대한 공사잔대금 채무 5,935,000,000원, ③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 609,673,583원 등 10,815,646,283원(= 4,270,972,700원 + 5,935,000,000원 + 609,673,583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호증, 을 제1 내지 5,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H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제1심 법원의 S에 대한 감정축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합계 6,544,673,583원(= 5,935,000,000원 + 609,673,583원)의 공사대금 및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의 C에 대한 위 각 채권은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매도행위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시가와 비슷한 금액으로서 이를 피고의 자력으로 마련하는 등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정상거래이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있어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는 그 선의임을 주장하는 수익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C의 전 대표 I 및 현 대표 J과 친형제관계로서 C과 특수한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의 재정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311,947,000원 중 203,826,222원은 피고가 T의 중도금 대출 채무 203,826,222원을 인수하여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고, 잔금 108,120,778원은 C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 계좌에 2018. 10. 26.

264,200,818원이 잔액으로 있었고, 피고가 2018. 11. 7. 자신의 계좌에서 203,901,222원을 출금한 내역이 있을 뿐 피고가 실제로 매매대금을 송금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반복하여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그러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8. 11. 7. 접수 제1977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 중 '피고는' 뒤에 '소외 주식회사 C에게'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을 이 판결의 별지 목록으로 바꾸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평호

판사김혜진

판사이선희

별지